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2.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경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불균등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

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 ----- ----- ----- ----- ----- ----- ----- ----- ----- ----- ----- ----- ----- ----- 1. ~ 3. (생략)
<신 설>	3의2. 불균등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
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
우: 1천만원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 략)
<신 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

1. ~ 3. (현행과 같음)

4.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
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
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

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